



대한이비인후과학회

KOREAN SOCIETY OF OTOLARYNGOLOGY

우 137-070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55-3 서초 월드 오피스텔 1508 호
TEL: 02)3487-9091 FAX: 02)3487-9092 E-mail: entsoc@korl.or.kr Homepage : www.korl.or.kr

임 원 (2003-2005)

이 사 장	황순재
차기이사장	장혁순
부이사장	김종화
부이사장	심상열
총무이사	정광윤
고시이사	최은창
수련이사	오승하
간행이사	김민식
학술이사	이흥만
재무이사	노환중
보험이사	노영수
의무이사	권삼현
대외공보이사	차흥억
기획이사	홍성화
개원이사	신창식
법제이사	오천환
감 사	김종애
감 사	이상훈

(2004-2005)

회 장	김광현
-----	-----

제 79 차 학술대회

학술대회장	김광현
학술이사	이흥만
실행위원	
우정수	정종우
이병돈	변성완
이상학	조진희
김경수	선동일
김영호	태 경
정광윤	김영모
임현호	홍일희
정영호	

문서번호 대이학 05 - 447 호
시행일자 2005. 07. 07.
수 신 수련병원 주임교수 및 과장님
참 조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원 여러분
제 목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각종상 시상 안내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본 학회에서는 2004 년에 이어 올해에도 추계 학술대회 기간 중에 아래와 같은 상을 계속 수여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1. 포스터상
2. 자율평가고사상
3. 사회봉사상
4. 원로회원 특별상
5. 공로상
6. 우수수련병원상
7. 우수지부상
8. 협찬사 감사패

위 상과 관련한 규정을 덧붙임으로 첨부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덧붙임 : 1. 포스터상 및 자율평가고사상 시상 안내
- 2. 사회봉사상 규정 1 부
- 3. 원로회원 특별상 규정 1 부
- 4. 공로상 규정 1 부
- 5. 우수수련병원상 규정 1 부
- 6. 우수지부상 규정 1 부. 끝.

제 79 차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장 김 광 현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사장 황 순 재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협의회 회장 조 현



포스터상 및 자율평가고사상 시상 안내

1. 포스터상

- 가. 각 분과별(이과/비과/두경부외과) 최우수상(상금 30 만원) 및 우수상(20 만원)을 선정하여 상장 및 상금을 시상합니다.
- 나. 심사는 학술대회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며, 심사위원으로는 각 분과별 학술위원님과 포스터 Moderator 선생님께서 수고하여 주실 예정입니다.

2. 자율평가고사상

- 가. 오는 2005 년 9 월 3 일(토) 시행 예정인 자율평가고사 시행후 그 점수를 채점하여 년차별 1 등에게 상장과 상금 각 30 만원씩을 시상합니다.
- 나. 시상은 학술대회 기간 중 시상식 또는 총회 시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회봉사상 규정

2005년 4월 16일 제정

- 제 1 조 (명칭)** 본상의 명칭은 사회봉사상이라고 한다.
- 제 2 조 (목적)** 본상은 이비인후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이비인후과학회 회원의 사회봉사 활동을 장려함에 목적이 있다.
- 제 3 조 (수여대상)**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원중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각 1 명을 수여대상으로 한다.
- 제 4 조 (신청절차)** 신청자는 자기소개서와 함께 사회봉사 활동 내역을 작성하여 학회 의무위원회에 신청한다.
- 제 5 조 (심사)** 심사는 의무위원회에서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를 구별하여 각 1 명을 선정한 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 제 6 조 (시상)** 본상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상은 이사장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신청자가 없을 시에는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 7 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원로회원 특별상 규정

2005년 4월 16일 제정

제 1 조 (명칭) 본상의 명칭은 원로회원 특별상이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상은 이비인후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이비인후과학회 원로회원의 학술활동과 사회활동을 격려하고 장려함에 목적이 있다.

제 3 조 (수여대상) 실질적인 학술활동과 진료 및 지역사회 활동을 하여 학회의 위상을 높인 원로회원 1명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신청절차) 정회원이 대상자의 소개서와 함께 학술활동, 진료, 사회활동 내역을 작성하여 학회 의무위원회에 추천 신청한다.

제 5 조 (심사) 심사는 의무위원회에서 선정한 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시상) 본상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상은 이사장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신청자가 없을 시에는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공로상 규정

2005년 4월 16일 제정

제 1 조 (명칭) 본상의 명칭은 공로상이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상은 이비인후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많은 희생을 하고 아낌없이 노력한 회원을 치하하고 표창함에 목적이 있다.

제 3 조 (수여대상)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많은 희생을 하고 아낌없이 노력한 정회원 3명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신청절차) 정회원이 대상자의 소개서와 활동내역을 작성하여 학회에 추천 신청한다.

제 5 조 (심사) 의무위원회에서 3명을 선정 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시상) 본상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상은 이사장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신청자가 없을 시에는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우수 수련병원상 규정

2005년 4월 16일 제정

제 1 조 (명칭) 본상의 명칭은 우수 수련병원상이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상은 이비인후과학 전공의의 수련을 향상시켜 이비인후과학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수여대상) 이비인후과학 전공의 수련병원 중 1개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대상기간) 심사 대상기간은 전년도 3월 1일부터 당해연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심사) 심사는 수련위원회에서 이비인후과학 전공의 수련병원을 평가하여 1개 병원을 선정 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시상) 본상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상은 이사장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부상으로 상금 50 만원을 수여한다.

제 7 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우수 지부상 규정

2005년 4월 16일 제정

제 1 조 (명칭) 본상의 명칭은 우수 지부상이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상은 이비인후과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각 지부의 활동을 장려함에 목적이 있다.

제 3 조 (수여대상)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각 지부 중 1개 지부를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대상기간) 심사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 조 (신청절차) 지부는 아래의 지부 활동사항을 학회 의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부장, 총무 인적사항 및 연락처
2. 지부현황
3. 학술활동 개최 실적과 회원 참여 현황
4. 대외봉사 활동 실적과 회원 참여 현황
5. 친목모임 개최 실적과 회원 참여 현황
6. 지부회비 납부 실적

제 6 조 (심사) 의무위원회에서 1개 지부를 선정할 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제 7 조 (시상) 본상의 시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상은 이사장이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신청 지부가 없을 시에는 수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회칙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200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